

၁၀၀၇

書
1997. 12. 15. 月。 朝鮮人
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書
朝鮮人民出版社
朝鮮人民出版社總社編集局
書
朝鮮人民出版社總社編集局
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圖書出版社

(2000)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圖書出版社

朝鮮語、高麗方言、方言記(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圖書出版社 2000)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圖書出版社

၁၀၀၇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과 일본군'위안부'문제

2000

■ 1999. 6. 4(금) - 5(토)

■ 이화여자대학교 문화관

■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모임

■ 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목 차

주제 강연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일본정부의 책임"

-'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중심으로- … 7

발표 : 게이 맥두걸(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변호사)

주제 1. "일본정부의 진상조사의 한계와 과제"

발제(1) 일본사회 전후처리의 한계에 대한 정치사적 연구 … 23

발표 : 강창일 (한국, 배재대)

발제(2) 일본정부 진상규명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34

발표 : 우츠미 아이코(일본, 케이센 대학)

주제 1에 대한 토론

1. 강정숙(한국, 2000년 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36

2. 가와구찌 가즈코(일본, 변호사) … 39

3. 소지량(중국, 상하이사범대학) … 45

주제 1에 대한 질의응답 … 52

주제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가능성"

발제(3) 피해국의 입장에서 본 법적 해결 가능성 … 55

발표 : 김창록(한국, 부산대 법대)

발제(4) 가해국의 입장에서 본 법적 해결 가능성 … 65

발표 : 야수시 히가시자와(일본, 변호사)

주제 2에 대한 토론

1. 이미경(한국, 국회 연구소) … 70

- 2. 준 로드리게즈(필리핀, ASCENT) … 75
- 3. 배금자(한국, 변호사) … 77
- 4. 바이다 나이나르(미국, 국제자문위원회) … 81

주제 2에 대한 질의 응답 … 82

주제 3. 2000년 법정의 구성과 활동

- 발제(5) 2000년 법정의 목표와 의의 … 84
발표 : 마쓰이 야요리(일본, 바우넷 제팬)
- 발제(6) 2000년 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제안 … 92
발표 : 조시현(한국, 성신여대 법대)

주제 3에 대한 토론

- 1. 케이 맥두걸(미국, 변호사) … 104
- 2. 인다이 사호르(필리핀, ASCENT) … 105
- 3. 리아 잉치(대만, 변호사) … 106
- 4. 홍성필(한국, 이화여대 법대) … 108

주제 3에 대한 질의응답 … 110

심포지움 일정

첫째날 (6월 4일, 금)

9:00 – 10:00 기자회견(각국 대표, 케이 맥두걸)

9:30 – 10:00 접수

10:00 – 10:30 개회식

10:30 – 12:00 사회 : 권영자(국회의원)

주제강연 :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일본정부의 책임"

- '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중심으로 -

발표 : 케이 맥두걸(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변호사)

12:00 – 1:30 점심식사

1:30 – 4:30 주제1. "일본정부의 진상조사의 한계와 과제"

사회 : 김윤옥(정대협 공동대표)

1:30 – 2:00 발제(1) 일본사회 전후처리의 한계에 대한 정치사적 연구

발표 : 한국(강창일, 배재대학교)

2:00 – 2:30 발제(2) 일본정부 진상규명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발표 : 우츠미 아이코(일본, 케이센 대학)

2:30 – 2:50 tea break

2:50 – 3:50 주제1에 대한 토론

1) 강정숙(한국, 2000년 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2) 소지량(중국, 상하이사범대학, 代讀)

3) 가와구찌 가즈코(일본, 변호사)

3:50 – 4:30 전체 질의응답

5:00 – 7:00 해외참가자들과의 만찬(석란)

7:00 – 8:30 맥두걸 변호사와 피해자들과의 만남

사회: 신혜수(정대협 실행위원)

정대협 교육관에서 할머니들과의 만남

7:00 – 9:00 한일 진상규명위원회 모임(이대 교수식당)

7:00 – 9:00 아시아 각국 법률위원회 예비 모임(연대 상남관 로비)

둘째날 (6월 5일, 토)

오전 10:00 – 13:00 주제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가능성"

사회: 박찬운(변호사, 대한 변협)

10:00 – 10:30 발제(3) 피해국의 입장에서 본 법적 해결 가능성

발표: 김창록(한국, 부산대 법대)

10:30 – 11:00 발제(4) 가해국의 입장에서 본 법적 해결 가능성

발표: 야수시 히가시자와(일본, 변호사)

11:00 – 11:20 tea break

11:20 – 12:20 주제2에 대한 토론

1) 이미경(한국, 국회 연구모임)

2) 준 로드리게즈(필리핀, ASCENT)

3) 배금자(한국, 변호사)

4) 바히다 나이나르(미국, 변호사, 국제자문단)

12:20 – 1:00 전체 질의·응답

1:00 – 2:00 점심식사

2:00 – 5:00 주제3 "2000년 법정의 구성과 활동"

사회: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2:00 – 2:30 발제(5) 2000년 법정의 목표와 의의

발표: 마쓰이 야요리(일본, 바우넷 제팬)

2:30 – 3:00 발제(6) 2000년 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제안

발표: 조시현(한국, 성신여대 법대)

3:30 – 4:30 주제3에 대한 토론

1) 게이 맥두걸(미국, 변호사)

2) 리아 잉치(대만, 변호사)

3) 인다이 사호르(필리핀, ASCENT)

4) 홍성필(한국, 이화여대 법대)

4:30 – 5:00 질의응답

6:00 – 9:00 아시아 각국 법률위원회 모임(연대 상남관 스카이라운지)

주제 강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일본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제법적인 접근

제이 맥두걸 (미국/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1. 1997년, UN 인권 소위원회는 무력 충돌시 자행되는 조직적 강간, 성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에 대해 연구를 해 줄 것을 본인에게 위촉했습니다. 본인의 연구 보고서는 무력 충돌시 자행되는 성적 범죄에 적용 가능한 확립된 인권법, 인도법, 그리고 국제형법의 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UN 인권 소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환영하고 승인했으며 본인에게 1년 더 그 임무를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본인은 새로운 내용이 보강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8월에 있을 유엔 인권소위의 다음 회기에 제출될 것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부록에는 2차 대전 중에 자행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를 하나의 사례연구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조직적 강간과 성노 예제의 대표적 예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구상과 시행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가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본인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구 '위안부' 문제는 UN에서 무력 충돌시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제에 대한 연구를 결의 하도록 하는 주된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2차 대전 중의 구 '위안부'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여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어떻게 오늘날 무력 충돌시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4. 오늘날에도 코소보 지역에 살고 있는 알바니아계 부녀자들이 국외 탈출을 기다리다가 세르비아계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인근 빌딩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간다, 시에라레온, 그리고 알제리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반군들에 의해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납치되어 성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라이베리아, 부룬디 콩고 민주 공화국, 미얀마, 페루 등지에서도 여성과 소녀들이 반군 및 그 진압군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스리랑카의 타밀 지역 여성들과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중국계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와 타인종이라는 이유로 인해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5. 이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소위 강간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중 일본군은 이 수용소를 '위안소(comfort station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여성과 소녀들은 군인들과 소위 '결혼(marriages)'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단어는 강제노동과 성노예제를 표현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성적 학대를 위해 납치되었으며, 고문당하고 불구자가 되기도 했으며, 강제로 임신되고 유�간도 당했고, 공개적으로 강간당하거나 강제로 매춘행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6. 본인의 보고서는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노예제, 집단학살, 전쟁범죄, 고문 등과 같은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인 배상을 포함한 형사·민사상의 완전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무력충돌의 상황하에서 성노예제와 성폭력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 2) '적'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 3) 일반적으로 무력 충돌시 생기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범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 4) 여성의 몸이나 성을 범하는 것을 '전리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 5) 군부의 교육 때문에 즉 군인은 무자비하게 적들을 짓밟아야 한다고 주입시키기 때문에
- 6) 개인적으로 병이 있거나 변태적인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게 될 경우에
- 7) 개인의 양심은 흔히 집단행동이나 상관의 명령에 굴복하기 때문에,

- 8) 여성이나 소녀는 일반적으로 천하게 보기 때문에.
- 9)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증 혹은 타인종 증오심 등이 종종 사회 속에서 그 특수한 그룹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향해지기 때문에
- 10) 성폭력은 강제임신, 출산억제,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부과 등을 통한 '인종청소'의 일환이기 때문에.

8. 일본군 성노예제의 경우에, 소위 '위안소' 설치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보고서에는 그 설치 목적인 점령지 내 거주자들에 대한 강간과 그로 인한 성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간첩행위를 막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제도의 이면에는 부녀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강간을 집중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 무력충돌시의 성노예제 및 성폭력의 근거와 관행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혼자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만으로 이러한 범죄의 억제가 충분하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확보하는 일은 범죄방지의 목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차 있게 될지도 모를 무력 충돌하에서 여성들을 성노예제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이 범죄들에 대한 처벌면제를 어떻게 종식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벌면제를 종식시킨다는 것은 법 위반에는 반드시 처벌과 구제조치가 따른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10.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면제는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을 도외시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무력충돌시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나 성폭력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종 모든 사회가 여성들이 구제조치를 구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들이 배척받고 소외되는 사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아야 할 수치심과 불명예, 인격 상실 등을 피해자가 대신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한 사회 속에서 지니는 종속적인 지위와 불평등으로 인해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는 일이 더 어려우며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11. 무력충돌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가중시킵니다. 여기에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증 및 그 밖의 증오심 등이 합쳐져서 여성들을

소수 집단으로 만들어 쉽게 학대당하게 만듭니다. 전쟁 중 혹은 무력 충돌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1)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해야 하고, 또 (2) 전쟁과 무력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우리의 과제는 폭력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지내는 이 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 뿐만 아니라 폭력 그 자체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보장되고 촉진되어야 합니다.

12. 그럼 지금부터 2차대전 기간 중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932년부터 2차대전 말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은 아시아 전역에서 징집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을 강간수용소(rape center)로 보내 성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수용소는 흔히 '위안소(comfort station)'로 불리웠고, (완곡한 표현으로) 그 피해자들은 '위안부(comfort women)'라 불렸습니다. 위안부들 가운데 한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기타 일본 지배하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일본군 성노예제로부터 살아 남은 생존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범죄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 본인이 이미 제출한 보고서는 주로 일본정부가 보존하고 있는 자료에 의존하여 2차대전 기간 중 강간수용소 설치, 감독 및 운영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그 보고서는 2차대전 중 '위안소'를 통해 여성들을 노예화시키고 강간했던 그 일에 대해 현재의 일본정부가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울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이 보고서는 특히 잔혹한 국제 노예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전쟁범죄 등에 근거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 일본군에 의해 억류된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대부분이 11세에서 20세 사이) 일본통치하에 있던 아시아 전역에 분산 수용되어 그 곳에서 강제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고 또 육체적인 학대 뿐 아니라 성병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25%의 여성들만이 매일매일 계속된 이러한 고통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이 '위안부'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 군부는 폭력, 납치, 위협, 그리고 기만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5. 일본정부 스스로에 의해 작성된 이 사실들은 일본정부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실, 즉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창녀촌에서 일했다라는 주장과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이 여성들은(당시 많은 여성들이 어린아이였음) 사실상 일본군 혹은 그들의 지원 하에 성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뜻과는 상반되게 이 '위안소'로 끌려갔고 범죄의 성격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만 적절히 규정될 수 있는 대규모적인 강간행위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16. 이 수용소에 억류된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은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은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자행한 일본군의 어느 누구도 위안부 제도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 일본정부는 여러 해 동안 2차대전 기간 중 일본군이 이 강간 수용소의 설치 및 감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오다가 드디어 1993년 8월 일본 각료회 고문실이 편찬한 '전시 위안부'라는 공식적인 연구 문건에서 '위안소' 설치에 일본정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일본정부는 과거의 '위안부'의 '명예와 인격에 손상을 준' 행위에 대해 많은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시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위안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본군 및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18. 간단히 말하면, 일본정부는 '위안소' 설치가 그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 당시에는 전시 상황에서의 노예화나 강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또한 전쟁관련 법규와 관습은 교전 중에 있는 나라의 국민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일본인이나 한국인에 대해 일본정부가 했던 행위는 이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당시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19. 법적 배상에 대해 일본정부는 '위안부' 개개인은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본정부는 이 여성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청구 사항도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 간에 체결했던 평화조약과 국제협정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2차대전 기간 중 설치된 강간 수용소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청구도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 규정에 의해 시효가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20. 이제부터 본인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법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장 1: 일본정부는 위안부 제도는 성노예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론: '위안부'에 대한 대우는 '어떤 사람에 대해 소유권에 속하는 부분 혹은 전체의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그러한 지위나 조건'으로 정의되는 노예제 속에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가 시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 위안부 여성들은 사용용도 및 목적에 있어서 가재도구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징집 과정, 이전의 자유 제한, 군장비와 함께 여성들의 운송, 여성들의 건강상태 점검(성병 및 피임에 관해서), 그리고 '위안소'에 대한 군의 통제 등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생존자들 또한 매일 그들에게 가해진 압력, 학대, 그리고 성폭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장 2: 일본정부는 노예 제도와 강간은 그 당시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론: 소급적용에 관한 그들의 주장은 50여년 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제기된 것 만큼이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20세기 초 노예제 금지는 국제관습법상의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었고, 일본 스스로도 1872년 폐루 노예상인들의 유죄를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1907년의 헤이그 협약 및 규칙들 그리고 1926년의 노예제금지협약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무력충돌시의 강간금지 또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고 헤이그 협약과 규칙들, 제네바 협약(특히 제네바 제4협약의 제27조), 그리고 일찍부터 권위있던 기타 법원(法源)들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주장 3: 일본정부는 전쟁 관련 법규나 관습은 일본인이나 한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당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인과 한국인 피해자에 관해서는 어떠한 전쟁범죄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론: 전쟁범죄에 더하여, 위안부 제도는 노예제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합니다. 이 두 범죄는 전쟁범죄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조항은 무력충돌과는 무관하게 적용되고 전쟁범죄처럼 교전 당사국 국민에게만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노

예제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또한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것인데 국제법상 강행규범은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제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 금지와 같은 강행 규범은 보편적인 관심사로 인정되고 있어서, 보편적 관할권과 공소시효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장 4: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은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론: 오늘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위안소가 설치되던 당시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907년 헤이그 협약 및 규칙 제3조에서와 1920년대 상설국제사법 법원(PCIJ)의 판결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법 위반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 스스로도 국제법 위반에 따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캐나다, 그리스와 같은 연합국과 체결한 전후협정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개인에 대한 구제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히 국제인권법과 인도법 등에서는 국제법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적절하게 국제법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제도를 설치하고 운영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자신의 행위와 자국군대의 행위, 그리고 정부나 군의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에게 가해진 위법행위들을 방지하고 조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대해 실패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주장 5: 일본정부는 설사 일본이 '위안부' 개개인의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청구권은 전후 평화조약과 배상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론: 이 문제는 전후협정으로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일본정부가 1992년까지 위안부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들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협정들은 단지 경제적인 재산청구권에만 관련되었을 뿐이므로 개인의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네바 제4협약 제147조는 어느 당사국도 자신이나 다른 당사국의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장 6: 일본정부는 개별적인 '위안부'들의 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론: 시효규정은 노예제,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기타 국제관습법의 중대한 위반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청구권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는 이것이 시효규정보다 우선합니다.

21. 본인은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위안부제도가 국제인권법과 인도법, 즉 인도에 반하는 범죄, 노예제, 그리고 전쟁범죄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위안부'는 배상을 포함해서 완전한 형사적 그리고 민사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2. 이번 본인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N 인권고등판무관은 강간수용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일본군의 잔학 행위에 분명하게 개입했었던 책임 있는 사람들을 일본 내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기소하기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UN의 임무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오늘날 생존해 있는 '위안부'관련 책임자들을 찾아내어 기소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그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이들 범죄자의 체포와 기소에 협조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생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을 위해 일본정부는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UN인권 고등판무관은 일본정부와의 협력하에, 신속하고 적절한 공식적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일본국내와 국제적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결정권을 가진 패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패널의 역할은 다음의 것들이 될 것입니다: (1) 비교가 될 만한 다른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적 배상액을 결정하고 (2) 이 기금의 내역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을 확인할 효율적 체계를 확립하며 (3) 구 '위안부'들의 모든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행정기구를 일본내에 설치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23. 본인은 보고서에서 일본국민들의 보상금과 지원에 대해 환영했던 반면에, 아시아 여성기금(Asian Women's Fund)이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생존자들에 대해 일본정부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기금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분열과 논쟁이 야기되었으며, 대다수의 생존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법적인 배상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본이 이용하는 한, 이 아시아 여성기금이 추구하려는 모든 선한 노력은 의혹과 분노로 얼룩질 것입니다.

24. 일본정부가 설치해야 할 법적 배상 기금에 더해, 구 '위안부'들은 일본에서 민사재판을 통해 혹은 본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규정한 타국의 법원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소송들이 일본법원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1998년 4월 27일 아마구찌현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3명의 한국인 '위안부'들이 30만엔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하기를,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제도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시인한 이후에, 일본은 관련 입법을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25. 이 재판기간 동안 이 '위안부'들은 어떻게 속아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그리고 일단 그들이 강간수용소에 들어 온 이후 받은 공포와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26. 하선녀 할머니는 19살에 상해 주둔 일본군 기지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그녀에게 기숙사로 쓰던 방 한 개가 주어졌고 매일 하루도 빠짐 없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매를 맞았으며 한번은 50센티나 되는 참나무 곤봉으로 머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역에 내버려졌습니다.

27. 이순덕 할머니는 사기와 협박으로 상해 강간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녀와 함께 14~15명의 다른 소녀들이 군인 텐트 주변에 지어 놓은 작은 오두막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한 장교가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이 후 주중에는 매일 8~9명의 군인들이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17~18명의 군인들이 그녀를 강간했고 이 일은 8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종전 후 그녀는 내버려졌고 고향에 돌아 왔을 때 부모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28. 박두리 할머니는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대신 대만에 있는 강간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당했고 단지 한달에 한 번을 쉬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역시 여러 차례 매를 맞았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두 할머니처럼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조차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9. 이 이야기는 단지 20만개의 이야기 중 세 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개인적이고 각각의 고통은 독특하고 각각의 증언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노예제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이 문제에 어떻게 집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멈춰 서서 각 여성 개개인이 당했던 고통과 치유의 필요성을 완전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30. 특히 실망스러운 일은 1998년 10월 9일 46명의 필리핀 생존 '위안부'들이 동 경지방법원에 낸 배상청구가 기각된 일입니다. 더구나 이 법원은 각 원고가 제출했던 사실관계와 경험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5년간 이들이 낸 청구가 모두 실망만을 안겨 주었고 그들 중 7명의 여성들이 이 기간에 사망했습니다.

31. 2차대전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잘못된 것을 알리는 희망적인 일들이 진척되고 있고 적어도 유럽 지역에서 발생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간 적어도 3명의 구 나치전범이 유럽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전시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고, 스위스에서는 유태인대학살 희생자의 도둑맞은 은행구좌, 금, 기타 자산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32. 최근 무력 충돌로 인해 야기된 성노예제와 성폭력과 관련하여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처벌면제 상황을 종식시키는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고슬라비아 재판소에서 결정된 것 중 3개의 소송은 성폭력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소송(Celebrity)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정 부분 본인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강간과 성폭력은 고문 행위와 같이 기소될 수 있고 또 기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르완다 재판소는 최근에 아카예수(Akayesu)사건을 판결하면서 강간과 성폭력은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고문과 같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위의 두 국제재판소에서 보여준 중요한 발전과 더불어,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또한 국제인도법과 처벌면제를 종식시키자는 캠페인과 관련해 환영할만한 발전입니다. ICC 규약에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성범죄 및 성관련 범죄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 규약은 명시적으로 '강간, 성노예제,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혹은 기타 다른

형태의 성폭력'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에 근거한 학대 또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특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은 또한 국제형사법원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성과 남성의 재판관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정한 재판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4. 그 밖의 ICC 규정들도 인도법의 발전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이 본인의 보고서에서도 인정했던 것들입니다. 즉 개인의 형사책임, 지휘관 및 상급자의 책임, 공소시효의 부적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35. 하지만 ICC는 본 규약이 발효된 이후에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만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잔혹한 범죄로부터 살아 남은 사람들, 예를 들어 2차대전 기간 중 군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가 되었다가 생존한 사람들은 ICC 이외의 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36.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구 '위안부'들에게 가해진 범죄에 대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몇 건의 소송도 포함됩니다. 구 '위안부'들을 위한 캠페인은 이제 한 지역, 한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지자들이 행하는 한 모델이 되었고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을 바라보며 계획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 법정"은 구 '위안부'문제와 일본군의 성노예제에 관한 문제를 다룬 강력하고도 중요한 법정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7. 2차대전 기간 중 일본군의 성노예제로부터 살아 남았던 적은 비율의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현재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소수의 여성들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대다수의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 세상과 더불어 공유해 왔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명예, 그리고 고결함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왔습니다. 본인은 모든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이 보여준 특별한 결단과 용기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분들이 잊은 것에 대해 그 어느 것으로도 완전하게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자신들이 당한 시련을 드러내고 털어놓을 때마다 그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8. 일본군 성노예제로부터 살아 남은 한 분이 워싱턴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수 천명이 넘는 우리 여성들과 소녀들을 성노예로 끌고 갔고 패전 후에는 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피해자들은 늙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평화를 누리기를 고대합니다." 이 생존자들이 평화를 누리는데 방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의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조차도 계속해서 부인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39. 일본정부가 50여년 간 부인하고 은폐해 온 이 일이 쉽게 바로 잡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시민들이나 정치가를 가릴 것 없이 위안소는 창녀촌이었지 강간수용소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위안부들은 스스로 매춘을 한 것이지 성노예가 아니었고 위안부제도는 개인사업이었지 정부나 군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삭제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단순히 진실을 선언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해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40. 결론을 말하자면, 2차대전 기0간 중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본인의 보고서에 대해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구 위안부들의 현 연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1. 일본정부가 구 '위안부'들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정부 스스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직 그런 다음에야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삶, 그리고 기억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2.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정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과거와 현재의 무력충돌시에 일어난 성노예제와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세계를 향해 좋은 선례를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현재 맞고 있습니다. 화해와 치유는 진실과 정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치유가 있는 곳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제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질문(이미경) 유엔에서 일본군 성노예의 범죄 책임을 물어 일본 유엔고등판무관이 어떻게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

답변(맥두갈) 유엔에 제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 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노력 덕분에 유엔인권소위가 이 특별보고관을 임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 권고안을 나오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없다. 예를 들어 고등판무관과 만나도록 해야한다. 이 문제를 판무관에게 계속해서 만나서 독촉해야만 한다. 여러분도 만난 적이 있으신데, 나도 8월에 보고할 때 여러분도 오셔야한다. 이 보고안에 각국 권고안을 명시할 것이고, 명시 할만 하다. 여러분들은 추진력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한다.

질문(조정현) 두가지 질문하고 싶다. 첫째, 전쟁범죄는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직접 반박하지 않아 소급 적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보고관의 생각은 어떤지, 둘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맥두갈) 유엔고등판무관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리해서 이 문제를 우선 순위로 하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것이 제일 순위인지는 잘 모르나, 이 문제에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한국피해자들에게도 국제법이 한국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인데, 이는 소급적용의 문제인데 군사, 국제법정에서 다뤄졌다. 그 당시에도 이것이 강력하게 다뤄졌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적인 문제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그 당시 전쟁범죄와는 별도로 인도에 관한 죄로서 인도에 관한 죄는 시효가 없다.

보충설명(신혜수) 금년 4월 메리 로빈슨을 만난 적이 있다. 케이 맥두갈 보고서 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알았다고만 했다. 그래서 직접 팀을 만들어 권고안을 만들어야

겠다.

질문(김창록) 게이 맥두갈 보고서의 주장3(Argument # 3)에서 "한국인은 식민지 당시 일본인으로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나, 1905년 조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를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넣어달라.

답변(맥두갈) 노예화와 인도에 반한 범죄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되었느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 주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미 합법 비합법을 떠나 위안부문제 강요자체로 책임과 배상할 충분한 범죄라는 것이다.

질문(김창록) 당시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

질문(익명) 일본군인과 여성들의 결혼이란 용어를 썼다. 그것은 파트너로 여긴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답변(맥두갈) 나는 이를 결혼으로 쓰지 않았다. 단지 내가 인용한 문장에 쓰여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다.

질문(지정일) ICJ에 제소할 것인지?

답변(맥두갈)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 가는 길은 두개이다. 한 개는 정부가 다른 정부에, 다른 하나는 자문기구 유엔총회, 유엔인권소위 등에서 제기할 수도 있다. 유엔이라는 것은 정부로 구성된 기구, 정부는 인권침해임에도 조치 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인권소위는 독립적인 자문기관으로 정부에 독립적이다. 인권 고등위가 이를 제기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주체는 정부인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런지.....

질문(지정일) 위안부 자체가 잘못된 것, 강제매춘이 더 적절하다. ILO에도 가능하지 않은가?

답변(맥두갈) 동의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동의해야하는데

질문(아마구치 아키코) 아마구찌 지방법원에서 손배금을 30만엔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적은 액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6년동안 노력의 결과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맥두갈) 저는 이 법적인 판결도, 금액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92년도에서 98년도 노력으로 이를 지방재판소에 기록으로 남겼고, 판결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적절하지 않다.

질문(준 로드리게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계십니까? 전쟁 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는지요.

답변(맥두갈) 정보를 수집했고, 가해자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범죄책임을 물을 자료를 찾고 있다. 50년 전 일이라서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나치 처벌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전쟁책임자 처벌했고, 이미 이뤄졌다. 이런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위이다. 미국인과 이야기를 한적 있는데, 미국에서 전쟁범죄를 규제를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미국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질문(마쓰이 야요리)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조치를 취하면 도움이 되겠느냐.

답변(맥두갈) 물론, 그리고 이런 노력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결의안들을 만들 때 정대협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자마이카에 제가 갔을 때 결의안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노력이 있게된다.

질문(익명) 당신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구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말했다. 이렇다면, 이런 당신의 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반응은?

답변(맥두갈) 말씀드리자면, 개인은 기소할 수 있지만, 정부는 가능하지 않다. 가해자 개개인을 구분하고 판명하는 것에 관심, 고등판무관은 즉 이런 범죄, 책임자를 가려내야만 한다. 그러나 유엔이 주체가 되어서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질문(익명) 사망한 위안부 보상은 가능하나,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답변(맥두갈) 나는 잘 모르겠다. 자손들이 어느정도 배상, 보상의 권리가 있겠느냐 겠는데....

질문(익명) 그 친척들이 제기하는 형식은 미국, 멕시코간의 범죄청구에서 이뤄진 판결인데 금전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

답변(맥두갈) 멕시코의 그것은 좀더 다르다.

질문(정숙자) 이 문제에 대한 유엔회원국들의 입장은 ?

답변 (맥두갈) 나의 일은 유엔에서 위탁받은 일을 다루는 것이고, 유고는 전범재판소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주제1 "일본정부의 진상조사의 한계와 과제"

일본사회 전후처리의 한계에 대한 정치사적 연구

강창일 (한국/ 배재대학교)

1. 머리말

한민족은 근대에 들어와 일본으로부터 40여년 간의 침략행위와 40여년 간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였다. 그 사이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1937년 이후 자행된 9년간의 침략전쟁에서는 군사 지배적 통치체제에서 철저한 통제체제를 구축하여 인적 지원과 물적 지원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황국신민화]라는 가치 하에 조선민족의 완전한 말살정책을 취하였다.¹⁾ 군인·군속으로서, 노무자로서, 그리고 성 노예로서 강제 연행하였고²⁾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물자를 약탈하여 갔다.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고 이름과 성도 빼앗았으며 심지어는 [결혼장려]라는 미명아래 혼혈정책도 총독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도 하였다.³⁾

일제의 패망과 한민족의 해방이후 20 여년 간 단절되었던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재개되었다. 이때, 양국은 식민지 기간에 일제가 한민족에게 안겨주었던 희생과 피해에 대하여 당연히 청산하여 넘어 갔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이 [정치홍정]으로 종결시켜버렸다.⁴⁾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과거사 청산]을 회피하였고,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정치자금과 경제자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과거

1) 강창일, 「일제의 조선지배정책」,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1995

2) 강창일,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한국정신대 연구회 편 『한일간의 미청산과 제』 (아세아문화사, 1997)

3) 위의 글, 참조

4) 강창일, 「과거청산」의 과제와 한일협정, 민족문제연구소 편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아세아문화사, 1995)

의 진실을 왜곡시켜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래서 강도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역사진실이 실종되는 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이후 [과거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혀 이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종결]이라는 입장을 취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일부 몇몇 정치가들은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망언을 내뱉어 주변 나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고 반일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⁵⁾

특히 근래에 들어와 舊 日本軍 성노예제의 사실이 밝혀지고 한반도를 위시하여 중국, 동남아의 여성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사역 당하였음이 드러났다. 일본제국주의가 주체가 되어 강제 동원하였고 구 일본군 남성들이 '위안' 되었던 반인륜적 범죄행위였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묘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가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매춘이라고 강변하는 작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유엔의 국가배상 권리나 국제적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민간기금의 형태로 시혜적 차원에서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벽한 통제체계이고 모든 인적 자원의 수급이 일제당국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과 당사자들의 수 많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증거] 운운하는 궤변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인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에 대한 反證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 앞 뒤 근거 없이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왜곡시키고 정당화하려는 일본정부의 처사는 보편적 상식과 역사적 진실을 뒤엎는 것으로, [별종 나라 일본상]을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2. 잘못 끼워진 첫 단추-[한일 협정]

양국은 국교를 재개하면서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였어야 하였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한일협정](1965년 체결)을 분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⁶⁾

우선, 한일기본조약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가 전혀 없이,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하였다. 서로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이 문구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적이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무효라고

5) 高崎宗司,『妄言の原形』(東京, 木犀社, 1990) : 강창일, 「전후 일본인의 역사인식과 망언」,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편,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한길사, 1996)

6) 앞의 책, 민족문제연구소 편,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참조

하는 일본측 주장은 확인한 것이 되어 버렸다. [원천적 무효]인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한일협정은 양국간의 올바른 [과거청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버리는 문서가 되어버렸다.

다음에, 한민족은 불법 강점 중에 일제의 공권력에 의해 당한 피해와 희생에 대하여 권리로서 배상과 보상을 받아야 하고 일본은 의무로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조약과 동시에 조인된 [청구권 협정]에서는, 전문에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이라 하여, 배상이나 보상적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1조에서는 무상 3억불, 차관 2억불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일본당국자의 주석처럼 이것은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조는 제1조와 전혀 상관 없이 양국과 양국의 국민간의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다. 이 협정이 유효하다면 한민족의 사적(私的) 배상청구권도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해소된 것이 되어 버린다.

과거 일본의 이러한 비상식적 주장과 논리에 동조하고 짹을 진 박정희 군사정권은 역사적 정당성도 정통성도 갖지 못하는 [친일]정권이었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과 민족의 자존, 이익을 3억불에 팔아 넘긴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학생과 국민은 이를 반역사적, 망국적 조약으로 규정하여 범국민적 저항을 하였고 군사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를 막아내었다.

그 이후 한일 양국은 왜곡되고 파행적인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왔다. 경제적 종속화의 문제는 차지하고,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뒤파리, 그에 명분을 둔 망언, 교과서 왜곡 등은 한국인에게 우려와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비상식적이고 별종인 [파렴치한 일본인상]을 부조하였다. [과거사 문제]나 교과서 문제, 망언 등이 터지면 한국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다.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시끄러운 한국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양국 정부의 정치놀이 때문에 그 짐은 양국 국민에게 부하되어 상호불신과 오해의 심화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의 부정한 권력은 일본의 우익 보수세력과 공동범죄자가 되어 상호간 부정한 권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여 왔다.

3. 1945년 8월 15일, 연속인가 단절인가

우선 한국의 정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민족은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일

마지나지 않아 불어닥친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한은 과거 [친일] 행각을 하였던 반민족 세력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친일파]가 정치 및 사회의 지도층으로 재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식민지 잔재와 유산의 청산은 기대할 수가 없고 대 일본 관계에서도 [과거 청산]은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

일본은 1945년 패전을 계기로 원하든 원치 않은, 일단은 수술을 당하였다. 천황의 정치적 실권이 박탈당하였으며 [現人神] 천황은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재무장이 헌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였고 재벌도 해체 당하였다. 반 군국주의적인 진보 세력도 비록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파트너로서 만년 야당으로서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승전국 미국의 보호아래 집권당 자민당은 반공·친미 노선을 표방하면서 경제재건, 고도성장을 거쳐 비아흐로 경제대국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에 걸맞은 총체적 대국화를 겨냥하여 돌진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과 현상만을 가지고 1945년 8월 15일의 시점을 역사의 단절점으로 자리 매김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정계 및 관료계의 인맥 및 구조, 역사의식과 인식, 세계관과 가치관, 등을 지표로 하여 살펴보면 그처럼 간단히 단정하기가 어렵다.

패전이후 전쟁 책임으로 추방된 관리(군인제외)는 도합 1,809명이다.⁷⁾ 이중 경찰간부가 1,219명이고 일반 관료는 234명에 지나지 않았다. 관리는 군인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지탱하고 이끈 양대 축임에도 미국은 대 소련 방위전략과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철저한 반공의 [황국관료]를 재기용하였다. 그후 일본은 내각책임제 하에서 관료 지배체제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관료중심아래 이끌려 왔다. 이 관료집단은 역사의 단절 없이 전쟁 전의 일본을 계승시키려는 타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의 의식 개혁 없이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단절화 요구는 한낱 강요된 압박에 지나지 않았다. 한 예로 1957년 내각조사실은 청년의 지도 방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있다.

금후, 국민 일반, 그 중에서도 청년층의 국가에의 관심을 어떻게 높이고, 그 왕성한 志氣를 고무할까는, 일본인의 방위의식 형성의 중심 테마이고, 새로운 민족주의 육성의 정신적 풍토의 배양이야말로, 현대 일본의 정치에 있어서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⁸⁾

7) 和田春樹, 「戰後 50年-日本保守派の朝鮮觀」『季刊青丘』23, 1995年 11月號에서 재인용

8) 荒井信一, 「帝國意識からの訣別を-戰爭責任論の發展とその現在」, 『世界』1994年 9月號에서 재인용

문부성은 전전의 검정 교과서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특히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엄격히 하여 왔다. 역사 인식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의 반발과 비판에도(예를 들면, 家永三郎의 역사교과서 재판사건은⁹⁾ 너무나 유명하다), 아랑곳하지 않고 반동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사관아래 사실의 은폐와 역사의 왜곡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명성왕후시해에 관한 사실이 누락되는가 하면, 침략이 진출로 서술되고 청일전쟁·노일전쟁이 자위전쟁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한국병합은 명백한 불법강점임에도 마치 합법적인 조약체결을 통한 조처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¹⁰⁾ 문부성의 검정 제도를 통한 역사 왜곡 작업은 일본의 망론과 망언을 확대재생산하고 그에 토대를 둔 일본적 가치와 상식을 고착시켜 간다.

관료 집단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법무성 관료와 사법부는 재일 조선인을 범죄인시하고 차별하며, 조선인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을 거부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전전의 관료 출신들은 패전 후 정계에 대거 입문하여 현대일본의 정치를 이끌어 왔다. 수상을 몇 차례 역임하면서 전후 부흥의 주역으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인 요시다(吉田茂)는 외교관 출신으로서, 자민당을 만들어 일본 정계의 보수 본류를 형성한다. 그를 이은 이케다(池田勇人)는 전전 대장성 관료 출신이고, 망언으로¹¹⁾ 유명한 구보다(久保田貫一郎)는 하얼빈 총영사까지 지낸 외교관 출신이다.

이들과 더불어 자민당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여 보수 방류로 자리 매겨지는 민주당계열의 지도자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농상무성 출신으로 도조 내각(수상: 東條英機)에서 상공대신까지 역임한 자였다. 패전직후 A급 전범으로서 구속되었으나 용하게 풀려나, 수상을 역임하는 등 일본 정계를 이끌어왔다. 한일협정의 주역인 시이나(椎名悅三郎)도 농상무성 출신으로 기시의 수족이었다.¹²⁾

皇道主義와 臣民意識으로 정신 무장된 구 제국 관료들이 전후 정계를 장악하여 집권하면서, 요시다로 대변되는 보수 본류와, 기시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방류 사이에는

9) 家永三郎은 자신이 쓴 역사교과서가 문부성의 검인에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술한 것 때문에 1962, 3년도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는 1965년 6월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고 그 사건은 무려 30년에 걸쳐 진행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은 국가교육권과 검정제도는 학憲이라는 판결이 내려 패소하였다(大田堯『私と家永教科書裁判』, 一ツ橋書店, 1994年), 참조).

10) 姜昌一, 「韓國からみた‘日韓合邦’」, 『戰爭責任研究』第12號 (東京, 戰爭責任センタ, 1996. 6)

11)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는, 강창일, 「전후 일본인의 역사인식과 망언」,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편,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한길사, 1996)

12) 若宮啓文, 『戰後, 保守のアジア觀』, 朝日新聞社, 1995年, 참조

대외문제에 관해서도 입장의 차이를 노정 한다.¹³⁾ 보수 본류는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고 친미 외교 노선에 입각하여 경제부흥과 고도성장을 전인하여 갔다. 이를 역사적 맥락에서는 후쿠자와(福澤諭吉)의 脱亞論적인 문명주의를 계승한 근대주의적 사고 틀이라 할 수가 있다. 반면, 기시로 상징되는 보수 방류는 반공주의와 국수주의를 내걸고 민족자존과 아시아 중시의 외교론을 주장한다. 기시는 전전의 우익 사상가인 기타 잇키(北一輝)의 국가사회주의와 오가와(大川周明)의 대아시아주의를 신봉하였던 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명치기 이후 우익 사상의 대외 이데올로기인 아시아주의를¹⁴⁾ 계승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일본적 민주주의 혹은 타협정치라고도 하는 교묘한 권력과 사상의 분점은 일본의 국익 앞에서 교묘히 조화를 이루면서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승·전개되었다. 근대주의적 인사들이 망언을 내뱉어 외교 쟁점화 하면, 아시아주의자들은 이를 위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이러한 상호보완적 정치 테크닉을 잘 설명하여 주는 부분이다.

근대주의는 현실을 중시하고 경제를 우선시킨다. 합리주의를 내세우고 유럽 추수적 곧, 탈아적 입장을 강조한다. 근대의 제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고 나아가 신봉한다. 그래서 과거의 제국주의적 국제 정치 속에서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정치의 운용과 일본의 침략행위는 정당화되며 그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전쟁은 정의이고, 일본의 전쟁책임과 원죄의식은 패전의 결과로 연합국 측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력이 강성할 때까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자인하기도 한다.

아시아주의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경제주의, 개인주의, 공리주의, 등 근대적인 가치와 질서를 거부하는 반 이성주의적인 감성주의에 서 있다. 근대 국제정치를 서양 대 동양, 백인종 대 유색인종, 기독교 문명 대 비기독교 문명간의 대결로 본다. 그래서 동양은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치기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아시아는 하나다]라는¹⁵⁾ 화두를 명제로 받아들인다. 감성에 호소하고 자극하는 아시아주의는 심정적 차원에서 근대일본의 대외팽창의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사상화(思想化)되어 갔다. 침략을 은폐하고 정당화하여 주는 좋은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아시아주의의 첫 대상은 한반도였다.¹⁶⁾

13) 앞의 주, 참조

14) 竹内好編,『アジア主義』(東京, 筑摩書房, 1963) : 강창일, 앞의 글, 「일본 대륙남인의 한반도 침략-일본 우익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참조.

15) 齋藤隆三郎,『岡倉天心』(東京, 吉川弘文館, 1960), 참조

16) 강창일, 「일본의 우익과 조선지배」, 『한민족 독립운동사』 제5권(국사편찬위원회, 1989)

근대일본 우익의 본류이며 초국가주의 단체인 흑룡회(黒龍會)는 이 사상으로 무장하여 [일한합방론]을 주창하면서 조선침략을 선도하여 갔다.¹⁷⁾ 조선 침략과정에서 그들의 [혁혁한 공로]는 명치천황이 칭찬할 정도이니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후 아시아주의는 만주 침략과정에서는 [동이족(東夷族)통합]의 논리로 발전하였고, 태평양전쟁에 이르러서는 대동아 공영권 사상으로 그 지역적 외연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계승한 정치가들이 보수의 한편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전전의 일본적 침략주의 논리가 현재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근대주의와 아시아주의가 함께 현대 천황제의 틀 속에서 어우러져 공생하면서, 전전의 역사인식은 계승되고, [과거사] 정당화 작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망언의 발설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한 정략은 경제적 풍요로움, 조작된 중산층 의식과 일등 국민 의식 속에서 배태된 안정추구의 사회심리 현상과 맞물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일본적 상식과 가치인 망론과 망언의 확대재생산 구조가 정비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근대일본의 천황제는 제정일체(祭政一體)적인 고대천황제의 근대적인 변형이다. 천황을 국가적 차원에서,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세속적인 정치권력의 화신으로 삼아 비로소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강력한 구심력에 의해 창출된 근대일본은 넘치는 에너지를 대외팽창으로 돌려 해소시켜 나가면서 침략국가로 발전하여 갔다.

1945년 패전으로, 침략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천황은 최고의 전쟁책임자로 책임을 묻고 천황제는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 순리였고 국제적인 상식이었다. 그럼에도, 전후 동서 냉전체제의 기류가 형성되고 중국대륙의 공산화, 소련의 극동 중시정책 등이 노정되는 가운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전쟁책임의 문제를 방기하고 천황을 내세워 반공의 보루로서 일본을 이용하였다. 천황제는 반공의 확실한 담보였기 때문이었다.

현대 천황제는, 천황에게 정치적인 실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戰前의 천황은 [천황]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본 국민과 국가의 상징으로서 헌법에 자리매김 되었고 신앙의 대상인 종교적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전의 근대 천황제가 계승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신앙성은 일본의 大國化에 발맞추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과 과학성을 초월하는 천황 신앙의 정신구조하에서 전전에 [現人神]인 천황의

17) 강창일, 앞의 논문, 「일본의 우익과 조선지배」; 「일본 대륙남인의 한반도 침략-일본우익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참조.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은 「無誤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대일본에서 정치적 실권자인 천황에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일본이 주변 민족에 대하여 저지른 [죄악]에 대한 자기변명과 정당화 작업은 이러한 자기 모순적이고 倒錯적인 정신구조하에서 나오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다.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는 실리를 추구하는 치밀한 경제적인 계산 하에서 나온 것 이기도 하다. 전전의 [죄악]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국과 그 국민에게 엄청난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망언을 일삼으면서 逆請求權을 주장하였던 것이 좋은 예이다. 실제로 일본은 전후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국교를 재개하면서 후진 약소국 정권의 권력적 취약성과 경제적 [지원]의 다급함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그들의 妄論을 관철시키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과거청산]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객관화와 합리화의 선전도구가 되고 망론과 망언의 정신구조를 더욱 강화시켜주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패전이후 일본에는 많은 변혁이 있었음에도, 정신사 및 정치사적인 측면에서는 1945년 8월 15일의 시점이 단절점이 아니라 연속점임을 확인시켜 준다. 패전후 물거품처럼 일었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역사인식은 스스로의 [과거청산]을 단행하지 못하면서 방류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 경제대국화, 종체적 대국화의 흐름에 타면서 [일등국가] 일본의 신화가 되살아나고 보수 우경화의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이 자기와 他者에 대하여 [과거청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4. 맷으면서 - 과제와 전망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의 결의나 상징적이나 마 국가 원수적 지위를 갖고 있는 천황의 반성과 사죄를 그리고 그에 상응한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혀 그러한 조처가 내려진 적이 없다. 간혹 수상이 사죄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떠한 효력도 갖고 있지 않은, 임기응변적이고 미봉적인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이 되었다.

사회당 출신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라야마(村山富市) 수상 재직 시에 있던 전후 50년을 계기로 나온 [전후 총 결산]의 국회결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됨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본원은, 전후 50년에 즈음하여, 전 세계의 전몰자 및 전쟁 등에 의한 희생자에 대하여, 추도의 誠을 바친다.

또한, 세계의 근대사상에서 수많은 식민지 지배랑 침략적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행위가 타 국민 특히 아시아 제 국민에 안겨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應(念)표명한다.

우리들은 과거의 전쟁에 대한 역사관의 상위를 뛰어넘어,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우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본원은, 일본국 헌법이 내걸은 항구평화의 이념아래, 세계의 나라들과 손을 잡고, 인류공생의 미래를 개척할 결의를 여기에 표명한다.¹⁸⁾

가해자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의 책임을 [전 세계]로 운운하면서 희석시키고 있다. 나아가 [역사관의 상위]라고 하여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정당화하고 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에 일본 천황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황은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단지, [한때 한반도의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깊은 슬픔은 항상 본인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언급하였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음미하여 보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성적 판단아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입각한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여 왔다. 감각적인 희로애락 차원의 감상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슬픔]을 운운하면서, 이것조차도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가해자임을 인정한다면 [슬픔]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다. 어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슬픔] 운운 할 수 있는가. 흡사 두 자식이 서로 싸움하여 슬프다고 하는 격이다. 그것조차도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니 이는 눈속임의 간교한 망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양국의 역사를 늘 진실을 추구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의 노력에 의해 짹트기 시작한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경애의 마음을 미래를 향해 키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문맥은 양국 국민이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자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진실 은폐를 문제삼아 왔다. 특히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

18) 앞의 책, 若宮啓文, 『戰後, 保守のアジア觀』에서 재인용

인의 역사인식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 국민까지 포함하여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상호간의 인식부족과 책임을 나누라는 말투이다.

천황의 말은 노골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무오류의 [현인신]으로서 한민족과 일본민족의 위에 군림하면서 양 민족의 잘 잘못을 지적하여 주는 절대자적 태도와 자세가 엿보이기조차 한다. 훤히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밖에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천황이 오히려 애처롭기 조차하다. 과거 역사의 [위대함과 정당함]의 여부는 천황제 자체의 존폐와 관계되는 사안이고 그것이 부정 될 때는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가.

작금에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애국]의 탈을 쓰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모든 [과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다. 역사의 추를 거꾸로 달려고 하는 보수 반동의 작태이다.

반인륜 범죄에 대한 정당화와 합리화는 그 자체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상식과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 이러한 작태는 일본과 일본인을 위해서도 더 이상 용납하려면 안 된다. 역사는 비판의식에서 시작하며, 진보를 위하여 재해석하여 가는 것이다. 일본의 진정한 진보는 철저한 과거 비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곧 일본을 위해서이다.

제반 분야에서 새로운 발돋움을 모색하고 있다. 전쟁 체험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모든 분야에서 자연적 세대교체의 흐름에 타서 주역이 되고 있다. 이 세대는 부흥과 고도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였고, 일등 국민의식으로 정신구조가 틀 짜여 있다. 戰前의 황국신민관료 출신들이 전후 재등장하여 집권하면서 펼친 세뇌교육의 일정한 작용을 받으면서 의식이 형성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이 내세우는 [총결산]이란 역사왜곡과 정당화를 통한 [과거로부터의 정신적 해방]이고, [총체적 대국화]의 정치선언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대중을 이루는 2, 30대는 고도의 산업화, 경제적 풍요로움과 富의 향유, 새로운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물가치, 물 의식의 인간소외적 대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직된 소수가 비 조직된 無言의 다수를 로봇트 마냥 손쉽게 조절하듯이, 이온화되고 물가치적인 그들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천황은 이들 대중에게 이성을 뛰어 넘은 마술적인 신앙의 대상이고 파토스적인 감성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주술성과 신비성으로 포장된 현대 천황제 하에서 물가치, 무의식의 대중에게서 이성적 판단이나 보편적 상식에 기초한 역사인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권력구조와 정신구조하에서 망론적 일본상식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어 갈 것임은 自明하다.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정신구조와 정치구조상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천황제의 주술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정말 풀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것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일본에 사는 일본인을 위해서이다. [별종민족]으로서 고립된 체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천황이 없이는 일본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취약한 체제이다. 천황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국민통합과 일본적 아이덴티티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의 주술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숙명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공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모색되는 시점에서, 평화 공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 민족에게 부여된 절대 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역사의 進運에 동참하면서 퇴보하거나 패망하지 않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망론적인 역사인식과 가치관·상식을 불식하고, 진정한 [과거청산]을 통한 상호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한일협정]을 즉시 폐기하거나 개정하여 할 것이다. 잘못된 법이나 조약이 고쳐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의 벗들이 압력을 넣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구 일본군 성노에 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비롯하여 전 세계 양심이 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을 위하는 벗들의 충고이다.

더 이상 일본적 상식으로 망언을 일삼으면서 [과거청산]을 기피한다고 한다면 지구촌의 양심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1885년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적 개혁이 어렵게 되자 [조선 인민을 위하여 그 나라의 멸망을 축하한다]라고 하였듯이, [일본인을 위하여 일본의 멸망을 축원할 런지도 모른다.

주제1 "일본정부의 진상조사의 한계와 과제"

**세계 제2차대전 전과 동안 일본 제국군에 의한 강간, 성폭력
그리고 강제매춘에 대한 조사 보고서**

아이코 우츠미(일본/ 게이센 대학)

조사팀 형성

1. 도쿄 전범 재판소에 제출된 서면증거 조사

: 강간과 같은 성폭력 경우가 지난 국제 전범 재판소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나?

극동지역에서의 국제 군사 전범 재판소 (도쿄 전범 재판소) 에 제출된 서면조사를 지역별로 현재 조사, 분류하고 있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2. 유엔 전범 위원회

1943, 10월 20일 유엔 전범위원회 창설 동의됨

1944, 1월 18일 유엔 전범위원회 제 1회 회의

1944, 5월 10일 당시 중국 임시 수도였던 청킹에서 극동 태평양 소위원회 창립

유엔 전범위원회의 과업은 증거의 수집과 기록이었다 ; 용의자와 일본 전범 및 증거 자료의 현장리스트작성. 극동 태평양 소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기소 리스트에는 호주군 대에 의해 준비된 것뿐 아니라 중국의 상황에서 일어난 강간사건들이 포함되었다. 그 기소리스트는 현재 호주와 영국의 문서보관소에서 정독 가능하다.

3. 연합군 국가들에 의한 B 급 및 C 급 전범 재판소

중국, 일본 - 조사팀은 미합중국 태평양 군 총사령부내 법무대에서 창설되었다. 조사팀은 요코하마와 마닐라에 본대를 두고 있었다. 마닐라 본대는 강간 사건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발견된 진상의 일부는 도쿄 전범 재판소에 증거로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강간 사건들이 전쟁범죄로 기소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무대는 또한 호주, 영국, 캐나다, 중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위원들로 구성된 연대 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싱가폴 - 동남아시아의 연합군이 동남아시아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전범을 조사하기위한 조직이 동남아시아전선의 연합군 총 사령부에 설치되었다.

4. 미 합중국 총 사령부에 의한 전범 수사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합군의 B급과 C급 전범에 대한 수사 및 기소

5. 2000년 12월에 열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을 위한 조사

여성 국제 전범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유엔 전범위원회와 현재 법률가들에 의한 연구에 의해 조사중인 사건들 중 2-3사건을 발굴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그 사건들의 발굴 사전단계에 있다.

* 아이코 우츠미는 게이센 대학의 교수로서, VAWW-NET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 네트워크) Japan 내에서 전쟁 사료의 수집과 분석을 맡고 있다. 그녀는 또한 B급과 C급 전범으로 선고받은 한국인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소송사건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주제1에 대한 토론

한국의 진상규명 활동,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강정숙(한국/ 2000년 법정 진상규명위원장)

I. 발제와 관련하여

냉전체제와 현실정치의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전후 일본정부와 아시아 각국 정부간의 공식적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피해자와 운동단체의 활동 결과 국내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전쟁범죄임을 밝혀내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자국정부의 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 각국 정부와 각국 피해자, 일본정부와 각국의 피해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왔다.

방대한 자료로 동경제판과정에서 나온 성범죄관련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内海교수께 경의를 표한다. 그 작업을 기대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전체상을 밝혀내는데 약간의 제안을 하고 싶다.

중요한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극동재판에서 다뤄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이다. 당시 극동재판에서 다루어진 범죄는 기본적으로 연합군의 눈에 의해 수집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 말은 그 재판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합군측 피해가 기본적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일본에 강점당하였던 조선과 대만, 그리고 연합군의 식민지였던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츠미 교수의 접근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II. 한국의 진상규명작업 내용

현재 한국의 진상규명 작업은 크게 아래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1. 피해자 및 당시 군인 군속 등의 증언을 기초로 한 피해의 실상조사.

이것은 한국내외의 한국인 피해자의 동원과정에서 귀국과정(혹은 해외잔존과정)까지 위안소 생활을 통계와 서술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당시 상황을 드러낸다. 피해자와 징병자 군속 증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비인간적 행위와 일본군 위안소 경영과 관리자, 군대와 위안소와의 관계, 군인과 위안소와의 관계, 군대 내 명령 구조 등을 밝혀낸다.

여기에 일본 패전 직전·직후시기에 집단 학살의 사례도 수집 조사한다.

2.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일본정부의 책임 규명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결정과정과 군위안소 설립에 대한 과거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을 밝혀낸다. 이를 통해 전범자 명단을 작성한다. 또한 현 일본정부의 책임도 밝힌다.

3. 귀국 이후 지금까지의 삶과 상태조사

현재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를 통해 과거 피해의 연속이란 측면과 더불어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란 양 측면을 보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직접적으로는 일본 내지 가해자를 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 자기 반성과 자기 정화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등 가해한 행위가 없지 않고 또 오늘의 피해자 내지 피해국이 내일의 가해자 내지 가해국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4. 자료(문헌자료 및 시청각자료) 조사 및 수집

지금까지 일본 소장의 문서가 집중적으로 발굴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방대한 일본 자료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있다. 또 이 문제의 명백한 범죄성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문헌자료가 은닉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피해자 국가와 미국, 러시아 등지에도 중요한 문헌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자료 자체는 작성자의 의도에 크게 개입되고 당시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공간적인 사실과 이 범죄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조사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헌자료가 갖는 약점 때문에 그 자체에만 의존하기 보다 앞에서 언급한 증언과 이를 방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는 시청각자료 수집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 각국에서 발굴한 피해자 관련 자료 수집과 교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본군위안부 문제 진실 은폐·부인·왜곡 및 명예훼손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증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도 일본 내에는 진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며 왜곡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加害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의 뿌리를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펴 나가는데 중요하다.

6. 관련 주제 연구

위의 1)~5)까지의 이러한 일차적 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 문제를 역사, 여성학, 사회학, 심리학, 국제법 등 여러 관점에서 조망하여 사회적 파급력을 확산시킨다.

III. 2000년 일본군성노에 전범 국제법정과 관련하여

위의 진상규명의 목적은 가까이는 이를 기초로 [2000년 법정]에서 법정구성원을 선택하고 법정을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대해 자료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죄와 배상 등을 위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1. 피해자와 한국인 징병자 군속 등에 대한 증언작업을 기초로 법정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유형별로 대표적인 피해자 사례를 선택하고 증인을 결정한다.

2. 일본군 '위안부'제도와 관련한 가해자 선정하고 범죄사실을 밝혀낸다.

피해자의 증언, 한국인 징병자 군속자의 증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본군 위안소의 경영과 관리 책임자를 밝힌다. 그리고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정책결정과 일본군내 실시 책임자를 밝혀 전범자 명단을 작성한다.

3. 현재 재차 가해지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가해자 명단을 작성한다.

주제1에 대한 토론

전쟁 중 성폭력에 대한 연구결과와 향후 과제

- 중국 양시 성 유현의 경우 -

가와구치 가즈코(일본/ 변호사)

1. 연구방법

본인이 한 일원으로 있는 중국내의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진상규명 및 배상소송 지원 분과는 일본의 중국 침략기간 동안 양시 성의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일본군의 성폭력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는 1996년 10월, 1997년 3월말부터 4월초, 1997년 8월, 1998년 3월말부터 4월초, 1998년 8월, 1998년 9월말부터 10월초, 그리고 1999년 3월말부터 4월초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성내의 유현, 타이유완시, 그리고 양관시에서 행해졌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주로 (1)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생존하는 성폭력의 희생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면담, (2)"센시 질리아오"(문화역사 문헌), "상시 질리아오"(공산당의 역사), 그리고 그 성의 기록 등 공식 문헌을 포함한 문헌자료, (3) 여성희생자들이 억류되었고 집단 강간당했던 "위안소"가 있던 장소의 방문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역사가들에 의한 연구는 (2)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1)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연구는 1992년 12월 도쿄에서 있었던 왕아이화 할머니의 증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희생자들 중 하나인 그분은 자신의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50년의 침묵을 깨고 일본정부에 의해 저질러졌던 전쟁범죄를 용기 있게 고발했습니다.

(2) 대부분 최초의 전시 성폭력 관련 공식 문서는 중국정부의 안전기획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우리와 같은 비중국인으로서는 그 서류에 접근하는 것이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지방의 역사적인 문헌과 당시 역사 문헌도 일반적으로 상세히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이 기록들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한다해도 그것들은 단지 시간, 날짜, 장소와 성폭력의 희생자 수, 혹은 어떤 극단적으로 잔인한 경우, 예를 들면 희생자가 집단강간 당한 후 난폭하게 살해되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3) 우리는 일본군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기록이나 회고록 뿐 아니라 일본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식문서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공식 문서 중 많은 것들이 기밀 처리되어 있으며, 각 제대군인들에 의한 회고록이나 증언록에서의 정보는 종종 불완전하고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2. 연구대상과 성폭력의 전형적인 유형

우리가 지금까지 면담했던 10명 이상의 희생자들은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양 시 성의 유 현에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 성폭력을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겪어야했던 전형적인 성폭력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느날, 희생자는 그녀의 마을이 일본군에 의해 공격받을 때 일본군들에 의해 납치되어 체포된 채 어떤 시설물(포곽같은)이나 그런 시설물 근처의 산속의 동굴로 이송됩니다.

(2) 그녀가 납치 당한 바로 그날 일본 군인들에 의해 강간이나 집단 강간을 당했습니다.

(3) 20일에서 수 주일간 어떤 장소에 억류당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거의 매일 강간이나 집단강간을 당했습니다.

(4)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이 그 비참한 취급으로 인해 너무나 엉망이 되어서 더 이상 성적인 행위를 견디어내지 못할 때야 비로소 풀려났습니다.

(5) 희생자를 풀려나게 하려고, 그녀의 가족은 그들의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서 일본군대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했습니다.

(6) (5)에서 언급된 돈은 많은 경우가 일본군에 직접 지불되지 않았고, 일본인들을 도왔던 중국인 협조자들을 통해서 지불되었습니다.

그런 희생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소위 "위안소"라고 부르는 곳에서 수십 명의 일본군

인들과 어쩔 수 없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던 성 노예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남경에서의 집단강간 중 군인들에 의해 일대일로 강간당했던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과도 다릅니다. (희생자들에 대해 되풀이되는 이런 행위는 집단강간행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담했던 한 사망한 희생자의 친척 한 분을 포함하여 10명의 희생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 자신들을 강간했던 일본군인 개개인이 아니라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본인을 포함한 다섯 명의 변호사가 그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 캄푸 재판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야마구치 현 법원의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의 판결이후 표면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의 한계라는 장애를 걷어내고 직접적으로 일본정부가 일본군대에 일본 군대의 전시행위라는 기반하에서 (이를테면 성노예의 신규모집, 소개알선, 억류 및 "위안소"의 설치등) "위안소"에서 성노예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혹은 법령의 한계라는 장애를 비키어가서 정부에게 입법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 이 입법태만이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일본 군대의 만행에 대해 그들에게 배상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한계라는 점 외에도 일본 정부 자체에게 우리의 면담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성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본인은 우리 연구가 우리의 면담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성폭력이 군령이나 규율로부터 이탈한 각 개인의 일본군인들의 행위라기보다 일본 군대 자체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라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3. 대규모 학살의 일부로서의 성폭력

지난 일곱 번의 경우를 거친 우리 연구는 일본군대내의 시설과 그 인근지역에 억류된 동안 성폭력을 겪어야만 했던 많은 여성들이 일본 군대에 비협조적인 마을에서 일어났던 학살 과정 중에 납치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여성 희생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살았던 마을의 이름과 그들이 납치된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을에 덮쳤던 학살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문서기록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어떤 마을에 일어난 학살중 살해된 사람들의 이름은 여성희생자와 생존한 남성 마을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살해된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학살 사건은 그 여성의 일본군인에 의해 납치되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양시 성의 유 현은 1940년부터 1942년 사이, 일본군대와 공산당 군, 그리고 그 외

다른 병력들이 각축을 벌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대량학살사건들은 분명히 일본군에 의해 시작된 전술상의 작전이었으며, 그런 작전 실시 중에 한 사람 이상의 일본군인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은 모든 일본군대에 의해 – 혹은 다시 말해 일본 정부에 의해 가해진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비교적 공정할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성폭력은 결코 병사 각 개인이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 저지른 단순한 행위로 간단히 처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일본군에 비협조적인 마을을 파괴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공산당 군대의 작전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면 음식과 연료공급을 강요하기 위한 명백한 전술상의 의도로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좀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에서 혹은 좀 더 광범위한 아시아지역에서 위에 언급한 상황하의 유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여성들의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폭력에 대한 진상과 일본 군대를 이런 행위를 하게끔 부추겼던 전술적인 의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우리 연구의 범위를 피해국들의 공식적인 문서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내의 전 일본군 병사들이 간직하고 있는 회고록과 일기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대군인들을 면담하는 것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또한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런 대량 학살사건들이 일어 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영향을 받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성폭력 희생자들은 꼭두각시 마을 관현에 의해 일본군에게 "제공" 되었다.

우리 분과에서 연구된 한 성폭력 사례에서 중국 마을의 꼭두각시 관현은 병사들을 위해 "여성들을 제공하도록" 일본군에 의해 명령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사례에서 몇몇 여성들은 일본군 병사들에게 봉사하도록 마을의 꼭두각시 시장에 의해 지정 받아, 일본군 진지 근처의 한 구역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매일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한편 또 일부는 그들의 부모들의 집이 일본군 진지와 아주 가까이 있어 혹시 그들이 탈출할 경우 그들의 부모가 병사들에 의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전시기간동안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마을의 한 연장자와의 면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꼭두각시 마을 지도자들은 성폭력이라는 피해를 소수 집단의 여성들에게 한정시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중국인들로서 조그만 마을의 주민들이 침략군대에 의한 점

령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립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분열된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마을 관현들에 의해 '제공된' 희생 당한 여성들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려는 고 노력하는 동안 극도의 어려움과 맞닥뜨렸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마을의 연로한 지도자들은 사망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면담한 중국인 피면담자측은 뿌리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침략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중국 사회의 내부집단에 속해 있는 문제를 간섭하려 든다"고 분개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사명의 심각한 본질에 대해 경고 받아 왔습니다. 우리 일본인 연구원들은 어떤 중국 마을을 일년동안 세 번까지 조사할 때 지역 사회의 오늘날의 구성원들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지역 중국 주민들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대항하게 함으로써 교묘하게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시도했던 침략 일본군대에 의해 자행된 잔인한 실상과 구조적인 유형을 드러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인 진상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려는 일단의 일본인들의 "일본군대에 의한 성폭력의 희생자들의 일부는 "사실은 병사들과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거나 혹은 "자신들의 의지로" 병사들에게 봉사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힘들 것이며. 그들이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사들과의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범은 일본군이며 우리는 그 구성원들의 후예라는 점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피해국가에서 살고있는 사람들 사이의 인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도시지역과 대규모 진지 근처, 주요 수송로 근처지역의 '위안소'설치와 우리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성폭력간의 관계

일본정부의 대규모의 "위안소"운영 결정이 남경에서의 대량 강간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집단 강간을 명령했거나 적어도 그런 행위를 묵과한 군대 지휘관들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그후의 강간 대상을 군대의 통제에서 탈출할 수단이 전혀 없는 한정된 수의 여성들로 제한하고 (한정된 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마구잡이로 남경 대량 강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엄청난 수와 대조적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시아에 통틀어 막대한 수의 그런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성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매춘에 종사했다는 날조

된 이야기로, 일본정부는 그 당시 범죄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이나 남경 성폭력 이후에 죄의식을 실제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본인이 '위안소'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마다 "만약 전쟁과 같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런 잔혹한 방식으로 행해진 성행위라도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느꼈을까?" 하고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시의 그들의 파트너와의 삶에서라면 그들은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비정상적인 의식에 의해 압도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안소'가 마치 그들의 자연스런 일부처럼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죄의식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이나 대규모의 주둔지, 그리고 주요 수송로 근처 지역같은 일본정부의 완벽한 통제력이 미치는 곳에 위치한 지역에 국가는 직접 친절하게도(?) 병사들에게 여성을 강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심지어는 그런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죄의식을 줄여주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런 접대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일선 지역의 병사들은 스스로 결정하여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팸찮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 가즈코 가와구치는 일본 건설 회사인 가지마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하나오 카재판과 같이 세계 제2차대전 중 노동력을 강요받은 중국인들 의해 일본정부와 한 건설 회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된 몇몇 소송 사건들과 강제로 중국여성을 납치하여 집단 강간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 중국인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이다. 그녀는 최근 필리핀의 전 "위안부" 항소심을 위한 자문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주제1에 대한 토론

중국 본토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 연구의 현재 상황과 전망

첸 리페이(Chen Lifei, 주아동 교육대학 출판국 부편집장)
서 지량(Su Zhiliang, 상하이 사범대학 교수)

'위안부'라는 단어는 일본 정부 혹은 일본군의 명령에 의해 일본군 병사들에게 성적인 봉사를 강제적으로 제공해야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며 따라서 강제로 성노예가 된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위안부'제도는 조직화된 성노예제도이며, 일본 정부는 몇몇 국가에 '위안부'라는 미명으로 일본군의 병사들과 장교들을 위한 성노예를 활성화하였으며 그들을 세계 제 2차 대전동안 전방 부대에 배치하였습니다.

I. 중국 본토에서의 '위안부' 문제 연구의 현 상황

일본 관계당국은 한 성실한 학자가 의문을 제기했던 1992년이 될 때까지 '위안부' 제도에 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은폐해왔습니다. 중국의 지성인들은 이 문제 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열심히 추적했습니다.

1992년, 양시성, 유지안의 교사인 장 수양빙(Zhang Suangbing)은 유지안에 얼마나 많은 '위안부'들이 사는지를 연구하고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연구의 결과는 양시 리바오 지에 실렸습니다.

그 해 말, 상하이탄 지의 기자인 주 펑은 "'위안부'의 흐르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11호 발행물에 기사를 썼고 상하이 동부지역에서의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안부'문제는 점점 중국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양 후오(Jiang Huo), 쪐우 쟁예(Zhou Zhengye), 예 린(Ye Lin), 짜오 만(Zhao Man)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폭로: 중국 '위안부'"라는 제목으로 주오지아(Zuojia, 작가) 출판사에 의해 1993년

발표되었습니다.

베이징의 학자인 구안닝(Guan Ning)은 요시미 요시아키에 의해 편집된 "위안부 자료"의 일부를 번역했으며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국제화"라는 탁월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티지에시 얀지우 동당 Thijieshi Yanjiu Dongdang 혹은 세계 역사의 역동적 연구 제 9권, 1993년 발간)

헤 지(He Ji)는 또한 "일본제국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중국 '위안부' 자료"를 선보였습니다. (강그리 짱쟁 얀지우 Kangri Zhangzheng Yanjiu 혹은 반 일본전쟁연구 제 4권 1993년)

1995년에는 정보부 상하이 위원회와 상하이 시 관계 당국이 제 50회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전 기념일을 맞이하여 "반 일본전쟁과 상하이"라는 제목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강화한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었습니다.

1996년 6월, 저명한 언론인인 펑 인지(Feng Yinzi)는 류타로 하시모토 일본수상에게 일본군의 폭력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전달하는 서신을 썼습니다.

중국 공군 정치학 학교의 조교수인 후아 큐잉(Hua Qing)은 "자료와 역사연구" 정기 간행물에서 '위안부'제도를 일본의 범죄행위로 비난하였습니다. 가이난 지방의 지도적인 인물인 푸 헤지는 가이난섬과 관련된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제도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고 "철발굽아래 흐르는 피"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가이난 출판사 1995)

후아동 교육대학보의 부 편집장인 첸 리페이(Chen Lifei)는 일본군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인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번역하였습니다.

상하이 교육대학의 역사학과 주임교수인 서 지량(Su Zhiliang)은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도쿄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머무는 동안 '위안부'에 대한 방대한 양의 문서, 일지, 비망록, 그리고 신문등을 수집하였습니다. 귀국후 그는 상하이의 위안소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그의 연구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1993년 이래로 국내외에 많은 결과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리시 얀지우(Lishi Yanjiu, 역사 연구)", "종구오 리바오(Zhongguo Ribao, 데일리 차이나)", "중구오 퉽니엔 니엔바오 ("Zhongguo Qingnien Nienbao, 중국 청소년 연감)", 일본의 "아카하다(Akahata, The Red Flag)", 야조우 조우칸(Yazhou Zhoukan, 주간 아시아)", 미국의 "일본의 중국 침략 연구", 그리고 프랑스 국영방송과 중국 중앙 방송을 포함한 80 이상의 매체에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분석" (강그리 잔 쟁 얀지우

Kangri Zhan Zheng Yanjiu, 제3권, 1997년)과 " 중국 침략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에 대한 고찰" (첸 리페 공동 연구, 역사연구 제 3권, 1998), 그리고 " '위안부' 연구"(1999년 1월 상하이 슈디엔 출판사 발행예정) 등입니다.

6년간의 기본적인 연구 조사 후, 중국 학자들이 중국은 일본 파시스트들이 '위안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가장 큰 나라이며 중국 '위안부'들의 숫자가 가장 크고 그들이 가장 심하게 고통받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연구에서 드러난 주요한 진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에서의 '위안부'제도의 시작과 발전;

'위안부' 제도는 일본 군사주의의 탄생과 성장에 보조를 맞추어 발달되어왔습니다. 그것의 발전은 침략전쟁의 확산과 수립을 가져왔으며 일본군의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위안부' 제도의 수립과정에서 A급 전범인 오카무라 네이지와 마쓰이 이와네 두 사람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위안부'제도는 이 세기의 30년대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성 봉사를 고려했고 해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것은 193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상하이 함대의 부 대장인 오카무라 네이지는 접객업 종사자인 일본인 여성들로 구성된 "위안부" 단"을 조직하여 위안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많은 수의 여성들은 강제로 끌어와서 성 봉사에 할당시키고 그들은 침략전쟁에서의 군사 수에 따라 각 부대에 분배했습니다. 1937년, 일본은 전반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동안 만든 최초의 위안소는 "양지아자이 오락소(Yangjiazhai Entertaining House)"였습니다. 이 위안소는 1938년부터 1945년 일본 패망때까지 젠 지아자이 인루동 지앙시(Xiangy inludong Chenjiazhai) 지방에 존재했습니다. 일본군은 적어도 상하이 지역에만 77개의 위안소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중국에 설치된 지역에서의 위안소의 유형

위안소는 일본군의 부속 시설의 일종으로, 침략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명백히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는 일본군의 위안소들은 그 위치와 성격, 그리고 운영방식에 따라 4 그룹으로 분류됨은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본군 자체

에서 직접 설치한 안정적인 위안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본군과 민간 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위안소입니다. 세 번째의 위안소의 유형은 형식적으로는 일본인 이민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군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 군 명령하에 있는 민간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군대에서 지정하여 이용 된 사설 사창가입니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가 설치된 주요장소로는 중국과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타일랜드, 미얀마, 뉴브리튼 섬, 뉴기니, 사할린 그리고 일본(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이었습니다.

중국은 가장 많은 수의 위안소가 설치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인 헤이룽강(Heilongjiang) 지방에서부터 남쪽의 유헌(Yunnan)과 하이난섬(Hainan), 또한 치양수(Jiangsu), 제자강(Zhejiang), 푸자강(Fujian), 관동(Guandong), 광시(Guangxi), 유헌(Yunnan), 기주(Guizhou), 휴난(Hunan), 후베이(Hubei), 산동(Shandong), 헤난(Henan), 헤베이(Hebei), 양시(Shanxi), 랴오닝(Liaoning), 지린(Jilin), 레헤(Rehe) 지방 등에 산재해있었습니다. 즉 위안소는 일본군이 점령했던 어느 곳에서나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3) 위안소 문제의 조사에서 주목할 점

첫째, 일본군은 '위안부'를 구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그들은 중국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양민의 딸을 협박하고, 어린 여학생들을 속이고 포로가 된 여성들을 위협하여 '위안부'가 되게 했습니다.

둘째, 여러 나라에서의 자료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통해, 전체 '위안부'들의 수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나아가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와 동남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셋째, 일본군에게 끌려간 중국 여성의 수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병사들과 장교들을 위한 성 노예로 희생당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중국 여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 중국 '위안부' 생존자들의 현 상황

최근, 전쟁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생존자들이 양시(Shanxi), 안후이(Anhui), 후난(Hunan), 하이난(Hainan), 네이멍구(Neimenggu),

유난(Yunnan), 그리고 상하이(Shanghai) 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양시성 타이유안(Taiyuan in Shanxi)의 완 아이화(Wan Aihua)는 증언을 한 최초의 수난자였습니다.

유(Yu) 지방에서는 수십 명의 전 '위안부'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 중 리 지우메이(Li Ziumei), 천 자오린, 리우 미엔후안(Liu Mienhuan), 주 지지양(Zhou Xixiang)은 일본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도쿄 지방법원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일본을 순회하였습니다.

1966년 2월, 완 아이화(Wan Aihua, 정확히 호우 키아오리안Hou Qiaolian)과 구아 지쿠이(Gua Xicui)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안 줄린(Yuan Zhulin)은 후베이 지방의 우한에 살고 있는데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만행을 당해서 지금까지도 그 생활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60개 이상의 위안소가 있었던 하이난(Hainan)에는 현재 수십 명의 '위안부' 생존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키옹즈홍(Qiongzhong) 지방의 산리(Shanli) 마을에 사는 왕린쉬(Wanglinshi), 루오동(Luodong) 지방의 얀(Yan), 우(Wu), 가오(Gao), 쪽우(Zhou), 하이난(Hainan) 섬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한국여성인 박래선 등이 그들입니다.

유난(Yunnan) 서쪽 지방에도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어야했던 여성들이 수십명 살고 있습니다. 지금 76세인 리 리안춘(Li Lianchun)은 원래 유난지방의 롱링송cheng(Longlingsongcheng), 바이니탕(Bainitang) 마을에 살았었습니다. 1942년 8월 일본군 56연대 113 부대가 그 마을을 점령해서 강제로 '위안부'로 그녀를 끌고 갔을 때 그녀는 18세였습니다.

그녀가 소속되었던 위안소에는 중국 북동지방의 원주민 여성들과 인도여성들, 그리고 미얀마 국적의 파키스탄 여성들, 필리핀 여성들, 그리고 한 일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노예생활은 리 리안춘(Li Lianchun)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정신으로 위안소에서 탈출한 1943년 10월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자료를 보면 중국 본토에는 수백 명 이상의 전 '위안부' 생존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래 들어 일본군의 만행에 의해 고통받았던 이 할머니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종규안(Zhongyuan) 법률사무소는 일본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도쿄 지방법원에 일본군이 시행하였던 '위안부'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양시성의 리 지우메이(Li Xiumei) 할머니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생존해있는 전 '위안부'들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 계획

종전이후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존해있는 희생자들, 그리고 그들의 친척과 증인들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시급히 연구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역사의 진상은 손실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반 일본 전쟁 역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안부'문제 연구소를 설립, 모든 반 일본전쟁 역사 연구원간에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이 문제를 협력하여 연구하기 위해 특별 연구원으로 60명 이상의 연구원들을 연구소로 초빙.

둘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1) 현재 알려진 전체 24지방의 일본군 '위안부'와 위안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증언 녹취, 기록 사진 및 영화 촬영.

연구 분야는 다음 23개 지방과 헤이룽지양, 베이징, 헤베이, 산동, 양시, 상하이, 지녕수, 째지양, 안후이, 푸지안, 후베이, 후난, 광동, 광스키, 유난, 기주, 하이난,

(2) 난징, 베이징, 티안징, 랴오닝, 그리고 상하이 지방에 보존되어 있는 문건들의 보관.

(3) 일본군의 전 병사들의 회고록과 이 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써어진 서적들, 그리고 전 '위안부'들의 회고록 등의 수집

셋째, 2000년 "중국 '위안부' 증언연구", "위안부" 사진첩" 등의 발간.

비록 종전 50년 이상이 되었지만 일본군이 저질렀던 성 노예제와 같은 그런 범죄 행위가 아직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내의 우익이 고의로 진상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인간문명을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루어온 문화와 문명을 파괴하고, 양심을 없애버리고 인간본성의 가장 잔인한 면을 이끌어냅니다. 세계 제 2차 대전동안 일본 군사주의자들은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비이성적인 야심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독가스와 세균폭탄을 사용했고 산코작전(다 죽여버린다, 다 태워버린다, 다 약탈해버린다)을 수행했으며 그리하여 점령국가들의 사람들이 항복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최고의 전투력을 창출해내기 위해 40만 명의 여성들을 300만 명의 일본군 병사들을 위한 성 노예로 이용했습니다. 이 진상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하고 전쟁사에 있어 주요한 장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군사주의가 인간성을 짓밟는지, 전쟁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본 우익이 고의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쟁범죄를 분명히 밝혀내고 전범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전쟁으로 심대하게 고통을 받았던 일본인들이 전쟁의 죄악을 분명히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주제1에 대한 질의응답

질문(지정일)/ 가츠코 변호사는 묻고 싶다. 중국정부는 일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질문(윤정옥)/ 가츠코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조사 일본정부가 어떤 계통으로 연행했는지 알아냈는가?

질문(이미경)/ 리아잉치에게 묻겠다. 대만 70명 대만 정부 지원금 5명. 그 70명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 한국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질문(유춘자) 강정숙이 대답해주길 바란다. 친일파 숙청이 안된 관련자료? 일본인들도 자료 공개한 적이 있는데...

질문(이정선)/ 우츠미 아이코에게 묻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일본에 입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한다고 본다. 전쟁피해조사 100만인 서명인대회가 있는 줄 아는데 이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있나?

질문(김문숙) 우츠미 아이코에게 묻고 싶다. 나는 시모노세키 재판을 진행하는 책임을 초기에 맡았다. 강제연행문제와 매춘문제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질문(이미경) 우츠미 교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조사 연구로 몇 명쯤의 전범자를 확보할 수 있을까?

답변(우츠미 아이코) 다른 참가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범리스트는 입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입수할 수 없었다. 전범재판 방대한 자료 공개 외무성 작년, A은 그렇다 하고 B, C급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일본정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공개가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조전이 나쁘다. 그 중에서도 연합군 전범 리스트 관계가 해외에서는 공개되고 있다. 강간

이 중국사례에서 나오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형태로 연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전범재판에서 빠진 부분이다. 전범 부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재판 받고 있지 않다.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의 위안소 강간, 이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아우찌 아시요 군사재판, 군사점령 당시 바타비아 섬, 위안소 설치 종사자 일본 점령 한 다음에 위안소 개설, 또 스마랑 위안소 사건, 인도네시아 스마란 지구에 군 최고 책임자와 헌병대가 협력해서 위안소 설치,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조선인 위안소는 없다.

카리만다의 카리구파탄, 구체적으로 재판으로 열리고 있다. 이케다씨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군인이 아닌 밖에서 사람, 많은 이야기를 해주나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없다.

세 번째 질문은 진상규명의 연구는 학생포함, 변호사 중심으로 여러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원하는 모임이 있어 보상재판과 입법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답변(강창일) 조사한 동원에서 조선 총독부의 관여부분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체제는 통제체제로 1937년 강화되었고 39년 이후는 완전 통제체제하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물적, 자유이동이 불가능했다. 노동자 한명이라도 조선 총독부의 관여없이 이동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을 동원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당시 총독부는 자유모집, 관 알선, 총독부의 법제정에 따랐다. 그러나 자유모집 형태도 강제 연행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집과 관알선 사례에 있어서는 일단 관의 허가, 조선 총독부에서 허가, 도 단위로 할당, 특히 노동자인 경우에 그랬는데, 군 위안부는 군인, 군 단위에서 도 단위, 한국인도 관여, 당연히 놓어져야 한다. 그들이 죽기 전에 양심선언을 해야한다. 위안소에 갔던 자들, 관련자들, 하루 속히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답변(리아잉치) 대만 피해자는 70여명이다. 위안부에 대한 대만정부의 지원은 현재 42명으로 대만 부녀구제기금회에서 이 여성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대만에 한국인 위안부가 한 명이 있다.

답변(가와구찌) 중국정부의 피해자 원조는 대해서 말하자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말할 입장이 아니다. 사실조사, 진상규명 산서성 농촌, 산안에 있는 마을, 그 피해자 갑자기 규명할 수 없었다. 우선 조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0명 정도가 민간 조사를 해주었다.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이 아니었음을 말할

수 있다. 농촌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일본에 초청했다. 여권을 5월에는 신청했으나, 정부가 거절, 그 이유는 명확지 않다. 중국은 배상청구 재판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성폭력피해자라고 용어를 규정하지, 성노예라고 하지 않는다. 성폭력, 당시 상황이 성의 노예로써, 성노예라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를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이 있고 나서야 노예라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태원시 복수의 위안소가 있었다고 조사되었는데, 전선 게릴라와 같이 있었다. 의사에 의한 여성의 검사는 여성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정기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 위안소의 형태와 그 피해는 여러가지로 분류해서, 구별해야 한다. 그 차이, 특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답변 (강정숙) 직접적인 조사자료는 없다. 당시 조선인 자료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하급 장교나 하사관급조차도 실제 증언이 어렵다.

질문(맥두갈) 가와구치의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예제의 정의규정은, 1920년 노예방지 협약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적인 것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유고 국제 전범재판에서는 이 재판이 진행중이며,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발언(다카하시 기쿠에)/ 98년 국회의원인 101명이 법안 제출할 예정이다. 내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힘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12년 동안 어린 이 매춘 금지 노력했다. 정치가들보다는 판료들의 힘이 크다. 그러나 나는 입법을 통한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발언(지정일) 한국인들의 바램은 처벌, 보상, 규명인 것 같은데,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면, 승전국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주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가능성

피해국의 입장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가능성

김창록(한국/ 부산대 법대)

I. 머리말

1989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일본군'위안부'(이하 '위안부'로 줄여 씀)문제가 맨처음 조직적으로 제기된 이래¹⁾, 이 문제에 관해 거듭되어 온 논의의 결과, 그 법적 해결 방안에 관한 일정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었다²⁾. 그것은, '위안부'를 강요한 행위는, 노예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추업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육전법규관례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따라서 그에 관해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한국 시민단체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이효재,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 신혜수,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활동의 성과와 과제」, 위의 책 참조.

2) 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金明基, 『挺身隊와 國際法』, 法志社, 1993 ; 金明基 외5인, 「挺身隊隊員의 人權侵害에 대한 韓日間의 法的 諸問題에 관한 研究」, 大韓國際法學會, 『國際法學會論叢』 37-2, 1992.12. ; 박원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의 전망」,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각주 1)의 책 ;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 책임」,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학술논집-3』, 1998 ; 阿部 浩己, 「戦争責任と国際法」, 『自由と正義』 44卷 9号, 1993.9. ; 同人, 「軍隊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 『法學セミナー』 466, 1993.10. ; 同人, 「戦争責任と国際法」,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 No. 371, 1994.5.20. ; 戸塚悦朗, 「国際法から『從軍慰安婦・強制連行問題』を問う」, 國際人權研究會編, 『責任と償い』, 新泉社, 1993 ; 同人, 「連載 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 1-, 『法学セミナー』 469-, 1994.1.- 등 참조.